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06.18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5년 06월 01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06월 02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06월 10일

(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관 김왕년)

가. 제안이유

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대내·외 요구가 증대되고 「지방재정법」(14.5.28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,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 - 가)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, 특수한 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
- 2)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가)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
 - 나)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함
 - 다)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,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
- 3)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가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4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5)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과 지방교육재정 공개에 대한 대내·외의 요구 증대에 따라,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,

-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, 위촉직 위원은 1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,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음
-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두어 불공정한 심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며,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, 적정성을 확보하였음.
- 그 밖에 안 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 : 교육국장, 행정관리국장, 기획관
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4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안건의 배부)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2조(수당 등)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 [시행 2015.1.1.]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
3. 채권관리 현황
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
가. 교부현황

나. 성과평가 결과

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
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"는 "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"로 본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11.19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5.28.]

제60조의2(통합공시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,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>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>

[본조신설 2014.5.28.]

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[시행 2015.1.1][대통령령 제25781호, 2014.11.28, 일부개정]

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공통공시"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특수공시"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08.2.29., 2011.9.6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4.11.28.>

1.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
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14.11.28.>

④ 삭제 <2014.11.28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4.11.28.>